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의 안 번 호 5969

제안연월일: 2024. 11.

제 안 자: 교육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상정경과

의안명	의안번호	대표발의자	발의일자	상정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	제195호	정성국의원	2024.6.7.	제416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회의 (2024.7.24.)
	제2329호	백승아의원	2024.7.29.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전체회의 (2024.9.24.)
	제2400호	강경숙의원	2024.7.30.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전체회의 (2024.9.24.)

- 나.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4.9.25.)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- 다.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9차 교육위원회(2024.11.5.)에서 법안심사

소위원회에서 심사·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도록 하여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.

또한,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준비단계부터 학교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, 교육감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(안 제10조제5항 신설).
- 나.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,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(안 제10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 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하 여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4(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)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(이하 이 조에서 "보조인력"이라 한다)을 배치할 수 있다.
 -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-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0조(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	제10조(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		
리 지침 등) ① ~ ④ (생	리 지침 등) ① ~ ④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		
	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		
	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		
	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		
	<u>사고에 대하여 민사상·형사상</u>		
	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		
<u><신 설></u>	제10조의4(학교 밖 교육활동에		
	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)		
	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		
	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		
	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		
	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		
	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		
	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		
	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		
	인력(이하 이 조에서 "보조인력"		
	이라 한다)을 배치할 수 있다.		
	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		
	<u>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</u>		
	원을 하여야 한다.		

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

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

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